전문체육지도자 임용 배치 및 근무 규정

제정 2020. 12. 30.
경상북도 승인 2021. 01. 0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북도의 전문체육 진흥을 위해 도 대표선수(팀) 현장 지도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체육지도자』의 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체육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종목(팀)별『전문체육지도자』(이하 『지도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임용

제3조(임용 기준)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목(취약종목과 정책 종목) 또는 신설·창단 등으로 지도자 부재팀의 경기력 향상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팀(학교)에 우선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결원 보충방법) 회장은 지도자의 결원을 신규임용 방법으로 보충한다.

제5조(신규임용) 지도자의 채용은 본회 회원종목단체에서 추천한 지도자(코치) 또는 본회가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경기력향상위원회 심의를 거쳐 회장이 임용한다.

제6조(자격 기준) ① 지도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발행 해당 종목 2급 이상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인격과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1. 국가대표 선수를 지도한 실적이 있는자 (상비군, 청소년대표, 주니어대표 등 포함)
2. 전국대회 입상팀 및 선수를 육성 지도한 실적이 있는 자
3. 전국(소년)체육대회 대표 팀 및 선수를 육성 지도한 실적이 있는 자
4.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특별히 초빙된 지도자
5 국가대표 또는 도 대표선수로 출전 경험이 있는 자
6. 기타 본회가 해당 종목(팀)을 정책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적임자라고 인정되는 자

제7조(임용서류) 지도자(코치)를 임용하고자 할 때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이력서 1부.
2.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증 사본 1 부.
3. 회원종목단체 회장 추천서 1부.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5. 경기지도 실적증명서 1부.
6.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필수 및 최근 6개월 이내 발행한 것)
7.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1부.
8. 중앙경기단체 징계확인서 1부.
9.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10. 기타 체육회가 요구하는 사항

제8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자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 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재직기간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지도자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타 시·도체육회에서 징계처분 등으로 사직한 사람

제9조(채용계약) ① 지도자의 채용계약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 지도자의 채용계약 기간은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해당연도 중도 채용자는 채용일부터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신규채용 또는 재계약 시 근로 계약 기간 종료일은 정년퇴직 기준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재계약) 지도자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 회장은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며, 재계약자는 지도실적 증명서만 제출하고 변동사항이 있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다.

제11조(채용 구비서류) 채용이 확정된 지도자는 채용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채용신체검사서 1부.
2. 결격사유 확인서 1부.
3. 사진 2매(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명함판)

제3장 복무

제12조(담당업무) ① 지도자는 다음 사항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선수의 훈련지도 및 관리
2. 각종 대회준비 훈련계획서 및 참가 결과 보고서 작성 제출
3. 선수의 경기력 분석 및 훈련일지(성과표) 작성 비치
4. 훈련 장비 및 훈련장 안전 관리
5. 체육회 지시사항 및 경기력 향상과 관련된 제반 업무 이행

② 지도자는 매년 초에 연간 훈련지도 계획서를 작성하여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성실의무) ① 회장은 규정에 정한 근로조건에 따라 지도자를 근로시키며 지도자는 규정에 정한 사항을 바탕으로 근무에 임한다.

② 경상북도체육회 임직원 행동강령을 준용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훈련일지 및 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도 체육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도자는 도내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출전 시 출전현황(출전선수 인원, 숙소 위치, 전화번호 등)을 보고하고 최종 경기가 끝나면 대회 종합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업무상 비밀 준수) 지도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근무지) 본회 지도자로 임용되면 본회가 지정한 장소(팀)에서 선수지도를 하여야 하며 전지훈련 및 대회참가 등과 관련된 사항은 배치된 근무지 소속장의 지시에 따르되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겸직 금지) 지도자는 직무와 관련된 영리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7조(결근) ① 지도자는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일 퇴근시각 전까지 담당 책임자에게 신고하여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박한 사유 등으로 전일에 신고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당일 업무시각 전까지 연락하여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 또는 연락이 없는 경우와 담당 책임자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결근하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제18조(지각, 조퇴, 외출) ① 지도자는 질병, 부상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회 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지도자는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 부상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각, 조퇴, 외출 시간의 합이 연 8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보수에서 공제하거나 연차유급휴가 1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9조(관리) 지도자의 관리는 소속단체 및 해당 종목단체 책임하에 하고 변동사항이 있을 시 즉시 본회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근무시간 및 임금

제20조(근무시간) ① 지도자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주 40시간 이내로 한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을 근로시간에 주어야 한다. 단, 팀 및 기관(학교) 와 지도실정에 맞게 조정 할 수 있다.

② 훈련계획서는 전국규모대회 출전일정과 전국체육대회를 중심으로 수립하고, 전월 2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근무는 관공서의 공휴일 및 근무학교의 휴무일, 연차 등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근무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 중에 대회출전, 훈련(강화훈련, 전지훈련) 등의 사유가 있을 시 특별히 날짜를 지정하여 근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지도자 임금) ① 지도자의 임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등급)기준에 따라 체육회와 지도자 간 상호 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다.

② 지급기준

A등급 : 월 300만원 ~ 350만원

B등급 : 월 200만원 ~ 300만원

C등급 : 월 200만원 이하

③ 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신규 지도자>

· A급 1. 국가대표 선수경력을 가진 자

2. 본도 대표선수 출신으로 전국체전에 3회 이상 우승한 자

3. 전국체전 및 중요한 전국규모대회에서 우승지도 실적이 있는 자

· B급 1. 본도 대표선수 출신으로 전국체전 및 중요한 전국규모 대회에서 3회 이상 2, 3위에 입상한 자

2. 전국체전 및 중요한 전국규모대회에서 2, 3위에 입상한 지도실적이 있는 자

· C급 1. 전국체전 및 중요한 전국규모대회에서 8강 이상의 입상 지도실적이 있는 자

2. 각종 실적 및 경력을 감안 하여 충분한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기존 지도자>

· A급 : 전국체전 및 중요한 전국규모대회에서 우승지도 실적이 있는 자

· B급 : 전국체전 및 중요한 전국규모대회에서 2, 3위에 입상한 지도실적이 있는 자

· C급 : 1. 전국체전 및 중요한 전국규모대회에서 8강 이내의 입상 지도실적이 있는 자

2. 취약종목 및 팀을 지도하여 현저한 실력향상이 있는 자

단. 신규 또는 기존 코치 중 특별히 지원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대상자 및 금액조정을 결정할 수 있다.

제22조(급여지급일) 급여는 매월 20일에 지도자 본인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휴일이나 토요일일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23조(계산 기간) 급여의 계산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24조(지급방법) 지도자의 급여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

1. 급여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할 계산을 원칙으로 하며, 일할 계산은 그 달의 급여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눈다.
2. 무단 결근자는 결근일수에 상당하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5조(보상휴가제) 지도자와 협의에 따라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26조(정년) ① 지도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② 정년에 달한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의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 된다.

제27조(퇴직급여) ① 지도자가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내용은 그 규약에 따른다.

제5장 휴일・휴가

제28조(휴일) ① 지도자가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주일에 1회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단, 주중에 결근이 있는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②「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재량휴업일(개교기념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제29조(연차유급휴가) ① 지도자의 연차 유급 휴가는「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② 지도자에게 연차 유급 휴가를 허가하는 경우에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휴가 2회는 1일로 계산한다.

제30조(경조사 휴가) ① 지도자의 본인 결혼 또는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기준으로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결혼
   가. 본인 5일
   나. 자녀 1일
2. 출산 : 배우자(처) 10일
3. 사망
   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나.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3일
   다.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4. 입양 : 본인 20일

② 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여 휴가 일수를 계산한다.

④ 입양은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제31조(생리휴가) 여성지도자가 생리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월 1일의 휴가(무급)를 주어야 한다.

제32조(공가) 지도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하며, 공가 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6.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7.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제33조(병가) 지도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병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 훈련 및 경기 이외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은 연간 60일 이내

② 공무(훈련 및 경기지도 중)상 발생한 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때는 연 180일의 범위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지도자가 6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병가기간 중의 휴일 또는 휴무일은 그 병가일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병가일 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병가 일수에 휴일 또는 휴무일을 산입한다.

제6장 모성 보호

제34조(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 중 지도자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임신 중인 지도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 고용 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④ 임신한 운동부 지도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한다.

제7장 지도자 교육

제35조(교육) 지도자는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개발능력 및 자질 함양을 고양하기 위한 교육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8장 징계 및 해임

제36조(징계) 지도자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37조(징계 사유) ① 지도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업무상 방해 또는 민원을 일으키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경우
2. 허위보고, 허위문서 작성, 중요한 문서 내용 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5. 직무 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 위반하였을 경우
6. 회장(파견 팀 기관장)의 승인 없이 결근, 지각, 조퇴, 근무 장소 이탈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한 경우
7.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8. 상기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38조(징계) 징계는 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하며, 징계가 아닌 신분상 처분은 경고・주의로 구분한다.

1. 해임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2.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3.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동안 임금총액에서 10%이내에서 감액 지급한다.
4.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5. 경고는 과실에 대하여 서면상으로 주의하게 한다.

제39조(해임) 중도 계약해지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지도자가 선수지도에 부적절한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성)폭력, 폭언 등 비교육적인 지도 방법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금품・향응 수수, 회계처리 부적정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
4. 선수 육성 소홀 및 적정 선수 수 미확보로 팀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5. 고의적으로 우수선수를 타 시・도로 유출시킨 경우
6. 소속팀의 해체 및 조정, 예산의 감축 등의 사유로 계약의 해지가 불가피할 때

7. 지도실적이 부진하고 향상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8. 질병 또는 사고로 선수지도 및 관리 임무 수행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제9장 안전 및 보건

제40조(안전 보건) 지도자는 위험방지 및 보건위생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1. 근로안전 및 보건관리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2. 안전장치, 소화설비, 위생 성비 기타 위험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허가 없이 제거, 변경 또는 그 효력을 잃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41조(보험가입) ① 본회는 지도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한다.

② 근로계약에 따라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사업주 분담금을 납부한다.

제10장 재해보상

제41조(재해보상) 지도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다.

제42조(서식) 이 규정에 따른 별지 서식과 서식번호는 별표1에 따라 관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 등 통상관례를 따른다.

제3조(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임용된 지도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규정의 폐지) 다음 각호의 규정은 각각 폐지한다.

1. 경북체육회 우수체육지도자(코치) 운영관리 내규
2. 우수체육지도자(코치) 선발 및 지원금 지급규정

【별표 1】

별지 서식 목록

연번	서식번호	서식명
1	제1호	계약서
2	제2호	서약서
3	제3호	이력서
4	제4호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동의서
5	제5호	휴가신청서
6	제6호	근무상황부
7	제7호	월별 운영 계획서
8	제8호	일일훈련일지
9	제9호	대회 참가계획서
10	제10호	대회참가 결과 보고서
11	제11호	전지훈련 계획서
12	제12호	전지훈련 결과 보고서
13	제13호	사직서
14	제14호	결격사유 확인서

[서식 제1호]

근로계약서

경상북도체육회와 ○○○종목 지도자 ○○○은 근로관련법령 및「전문체육지도자 임용배치 및 근무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당사자의 자유의사로써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갱신)한다.

1. 계약당사자

사 용 자 (갑)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업의 종류			전화번호		
근 로 자 (을)	성 명		종목		직위	
	주 소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2 (근로조건)

① 계약기간 :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 0년으로 한다.

② 근로 및 휴게 시간 : 1일 8시간(1주간 40시간) 범위에서 근로하고, 휴게는 근로시간 중 1시간 이상(2회 이상 부여가 필요한 경우 회당 30분 이상)을 부여한다. 다만. 구체적인 시업 및 훈련시간, 휴게 시간은 팀별 훈련계획 등에서 정한 시간에 따른다.

③ 휴일

○ 휴무일 : 토요일(무급)을 원칙으로 하되, 훈련 및 대회 일정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정일 또는 요일로 변경 또는 대체할 수 있다.

○ 휴일

- 주휴일 : 일요일(1주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 다만, 당사자 간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고, 팀의 훈련일정 등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른 요일로 변경할 수 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다만, 훈련 및 대회 일정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

④ 임　　금

○ 임금(연봉) : 연봉 금_____원(주휴수당 포함)

○ 계산방법 : 연봉을 12월로 나눈 월액을 매월 1회 지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50%를 가산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그 합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임금지급일 : 매월 20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계약당사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⑤ 퇴직금 및 사회보장보험

○ 지도자가 1년 이상 근속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 각종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근무장소 : 본회가 지정한 장소(학교)

⑦ 업무내용 : 선수의 훈련지도 관리 및 경상북도체육회에서 정하는 업무 등

⑧ 휴가

○ 연차유급휴가 등 휴가는 취업규칙[전문체육지도자 임용 배치 및 근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 사용하되, 이 내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해당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용 기간(회계연도) 내 모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일에 대해서는 수당(통상임금)을 지급한다.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그 합의에 따라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대회 참가 후 휴무일 등) 시키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조 (계약해지)

'갑'의 승인 없이 임의로 근무지 등을 이탈할 수 없으며,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지도자가 선수 지도에 부적절한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② (성)폭력, 폭언 등 비교육적인 지도 방법으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

③ 금품·향응수수, 회계처리 부적정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

④ 선수육성 소홀 및 적정 선수 수 미확보로 팀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⑤ 고의적으로 우수선수를 타 시·도로 유출시킨 경우

⑥ 소속팀의 해체 및 조정, 예산의 감축 등의 사유로 계약의 해지가 불가피할 때

⑦ 지도실적이 부진하고 향상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⑧ 질병 또는 사고로 선수지도 및 관리 임무수행을 계속할수 없을 때

제4조 (기타)

① 본 근로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문체육지도자 임용배치 및 근무규정과 근로 기준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재직한 상태로 타인에게 고용되거나 타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업무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④ 본 근로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당사자가 각 1통씩을 보관한다.

년 월 일

직장(사용자)		지도자(근로자)	
대표자	(인)	성 명	(인)

붙임 서약서 1부.

[서식 제2호]

서 약 서

본인은 경상북도체육회 지도자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경상북도체육회의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4. 경상북도체육회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업무 수행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보고하고 업무 지시를 받는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인)

경상북도체육회장 귀하

[서식 제3호]

이 력 서

<table>
<tr><td rowspan="2">성 명</td><td colspan="3">○ 한글:</td><td rowspan="4">사 진
(3.5cm×4.5cm)</td></tr>
<tr><td colspan="3">○ 漢字:</td></tr>
<tr><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3">-</td></tr>
<tr><td>현 주 소</td><td colspan="3">㉮(　　) ※ 직접 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주소</td></tr>
<tr><td>휴 대 폰</td><td colspan="2"></td><td>e-mail</td><td></td></tr>
<tr><td>최종학력</td><td colspan="4"></td></tr>
<tr><td>병역사항</td><td colspan="4">해당 없음(　　) / 미필(　　) / 복무(　　)</td></tr>
<tr><td rowspan="4">선수
경력</td><td colspan="2">기 간(년월)</td><td>소 속</td><td>비 고</td></tr>
<tr><td colspan="2"></td><td></td><td></td></tr>
<tr><td colspan="2"></td><td></td><td></td></tr>
<tr><td colspan="2"></td><td></td><td></td></tr>
<tr><td rowspan="6">지도
경력</td><td colspan="2">기 간(년월)</td><td>소 속</td><td>직책(감독,코치 등)</td></tr>
<tr><td colspan="2">.　.　∽　.　.(　　)</td><td></td><td></td></tr>
<tr><td colspan="2">.　.　∽　.　.(　　)</td><td></td><td></td></tr>
<tr><td colspan="2">.　.　∽　.　.(　　)</td><td></td><td></td></tr>
<tr><td colspan="2">.　.　∽　.　.(　　)</td><td></td><td></td></tr>
<tr><td colspan="2">.　.　∽　.　.(　　)</td><td></td><td></td></tr>
<tr><td rowspan="4">지도
자격
증</td><td colspan="2">년 월 일</td><td>종 류</td><td>시행(발령)</td></tr>
<tr><td colspan="2"></td><td></td><td></td></tr>
<tr><td colspan="2"></td><td></td><td></td></tr>
<tr><td colspan="2"></td><td></td><td></td></tr>
<tr><td colspan="5">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td></tr>
</table>

[서식 제4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본회가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2항”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합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1. 제공하신 정보는 선수단(지도자, 선수)의 계약 체결 시 급여 및 선수단 관리를 위해 사용합니다.
2. 선수단 관리(급여 등) 및 정보전달 등에 이용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E-Mail, 계좌번호

Ⅱ.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증명사진, 생년월일, 주민번호, 주소, 핸드폰번호, 전화번호(자택, 비상전화), 결혼여부, E-Mail 주소, 신상자료, 학력, 경력, 급여수령계좌, 주민등록등본, 기타 필요사항 등

Ⅲ.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사무처 처무규정 제73조에 의거 영구 보존합니다.

Ⅳ. 제3자에 대한 제공 및 공유 등

수집된 개인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상기 개인정보 취득목적에서 고지한 범위를 초과하여 타인(또는 기타 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관계법령이 정하고 있는 경우와 감독기관이 검사목적으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의 철회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할 경우 계약 진행이 불가능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기의 고지사항을 숙지하였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경상북도체육회장 귀하

[서식 제5호]

휴 가 신 청 서

팀 명	
직 위	
휴가종류	1. 연 가 ( ) 2. 반 가 ( ) 3. 여름휴가 ( ) 4. 경조휴가 ( ) 5. 공 가 ( ) 6. 병 가 ( ) 7. 조 퇴 ( ) 8. 대체휴일 ( ) 9. 기 타 ( )
기 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일간)
사 유	
비상연락처	

위와 같이 휴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자 : 00팀 코치 0 0 0 (인)

경상북도체육회장 귀하

[서식 제6호]

근 무 상 황 부

○ 총연가일수 : 일

○ 팀명 : ○ 직위 : ○ 성명 :

NO	종류	기간 또는 일시			사유	연락처	서명	비고
		부터	까지	일수				
1					-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경상북도체육회장 귀하

[서식 제7호]

00팀 0월 운영 계획서

□ 훈련계획

훈련기간	
훈련인원	
훈련장소	
훈련목표	
중점사항	

□ 전지훈련 계획

훈련계획 여부	있음 또는 없음
훈련기간	
훈련인원	
훈련장소	
훈련목적	

□ 대회참가 계획

훈련계획 여부	
대 회 명	
기 간	
장 소	
참가인원	
예상참가비	
예상성적	

□ 기타요청 및 건의사항

-

작성일		**작 성 자**	**직위 : 코치 성명: (인)**

경상북도체육회장 귀하

[서식 제8호]

00팀 일일훈련일지

☐ 훈련계획

훈 련 일	년 월 일(요일)	
훈련장소	오전	
	오후	
훈련인원 및 명단	지도자 명	
	선 수 명	
불참인원 및 불참사유	지도자 명	- 불참명단 : - 불참사유 :
	선 수 명	- 불참명단 : - 불참사유 :
훈련내용	오전 (~)	
	오후 (~)	
전일훈련 결 과	- 사고유무 : 있음( ), 없음( )	
	- 훈련 참가인원 변동 : 있음( ), 없음( )	
	- 특이사항 (일일훈련계획 변동사항)	
기타사항		

작성일		**작 성 자**	**직위 : 코치 성명: (인)**

경상북도체육회장 귀하

[서식 제9호]

대회 참가계획서

팀 명			
대 회 명		**소요예산**	
대회 기간		**대회 장소**	
파견 기간			
참가인원	○총 명[지도자 : 명 / 선수 : 명]		

	성명	세부종목	예상성적	비고
대회참가 세부사항				

붙임 1. 대회참가요강 / 붙임 2. 대회참가신청서

기타사항	-

작성일		**작 성 자**	**직위 : 코치 성명: (인)**

경상북도체육회장 귀하

[서식 제10호]

대회참가 결과 보고서

□ 대회 개요

대 회 명							
대회기간			**대회장소**				
입상실적	입상 인원		**메달 획득**	**구분**	**금**	**은**	**동**
				단체			
				개인			

□ 세부 결과

구분	성 명	결과	당초 예상전력	비고

□ 분석 및 향후 대책

작성일		작 성 자	직위 : 코치 성명: (인)

경상북도체육회장 귀하

[서식 제11호]

전지훈련 계획서

팀 명	
훈 련 명	
소요예산	
훈련 기간	
훈련 장소	
훈련 인원	
숙 소 명 **(주소/전화번호기재)**	

훈련목표	
훈련내용	- - - - - - - -

기타사항	

작성일		**작 성 자**	**직위 : 코치 성명: (인)**

경상북도체육회장 귀하

[서식 제12호]

전지훈련 결과 보고서

훈 련 명	
훈련 기간	
훈련 장소	
훈련명단	
숙 소 명 **(주소/전화번호기재)**	

훈련결과	

분석 및 문제점	

향후 대책	

작성일		**작 성 자**	**직위 : 코치 성명: (인)**

경상북도체육회장 귀하

[서식 제13호]

담당	과장	부장	사무처장	회장
사직서 수리일 :				

사 직 서

사직인	성 명	
	생년월일	
	팀명/직위	
	담당업무	
	입 사 일	
	퇴 직 일	
	주 소	
	연 락 처	

사직사유

○

○

○

○

○

○

본인은 상기와 같이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본인 : (인)

경상북도체육회장 귀하

[서식 제14호]

결격사유 확인서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내 용	해당	비해당
피 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직자가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비 해당란에 ○,×로 작성 요망.

본인은 경상북도체육회 전문체육지도자 임용에 결격사유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임용 후 위 내용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 취소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경상북도체육회장 귀하